

(별 첨2)

용역입찰유의서(안)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가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협중앙회 「계약 규정」(이하 "계약 규정"이라 한다) 및 수협중앙회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수협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사본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공고문에 따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5조(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용역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용역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용역계약일반조건
7. 용역계약특수조건
8. 과업내용서
9.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6조(관계 규정 등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수협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수협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은 수협에 귀속한다.

③수협은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수협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계약 규정 제51조 제3항에서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면허·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법인으로서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1년이상 해당 관련법령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⑤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8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수협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9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⑤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한글

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합하여 1인 1통만 제출하여야 한다.

②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수협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수협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수협은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수협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청렴계약이행확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수협에서 정한 청렴계약이행확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장기계속기술용역의 입찰) 장기계속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시 총용역을 대상으로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3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4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의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입찰 또는 개찰전에 미리 현장설명에 참가를 요하는 입찰에 있어서 당해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가 한 입찰
6. 입찰조건 및 그 밖에 입찰유의서에 위반한 입찰
7. 입찰보증금이 미달하는 입찰

제15조(입찰의 연기) 수협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일시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제16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수협은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7조(낙찰자의 결정) ①제14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수협이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수협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수협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4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수협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경우에 입찰자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희망수량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낙찰자가 될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이상 있을 때에는 입찰수량이 많은 자를 우선순위의 낙찰자로 하며, 입찰수량이 동일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⑦계약규정 제19조에 따른 전자자산처분시스템 또는 계약규정 제45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해당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제18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수협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수협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수협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계약의 성립) 수협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20조(계약보증금) ①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 규정 제61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계약 규정 제8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②낙찰자가 제20조제1항에 규정한 계약보증금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도 제1항이 적용된다.

제22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수협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기타사항) 이 유의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협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용역계약일반조건(안)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과 “을”간의 「_____」에 관한 계약으로서 “갑”과 “을”은 상호간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계약 전반에 관한 주요사항은 제2조 이하와 같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을”은 “갑”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법인을 말한다.

제3조(계약금액) ① 본 계약의 총 계약 금액은 금_____백만원(W_____,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며, 계약 이행 간 용역의 인건비, 사무실 임대 및 필요한 직·간접비 일체(네트워크 장비, PC, 소프트웨어, 전용선, 모뎀, 라우터, 유선전화 등), 집기 비품류, 부대 경비(출장비, 통화료, 팩스비, 복사비, 문서전달비 등) 등 일체 비용을 포함한다.

② 본 계약 체결 후 “을”은 인건비, 기타 일체 비용에 대한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에 영향을 미친다 할지라도 “갑”에게 이를 부담, 인상 요구할 수 없다.

제4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안요청서”, “제안서”, “시답서”, “대금 청구 계획서”로 구성되고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효력이 충돌 될 경우 “시답서”, “용역계약 일반 조건”, “제안요청서”, “제안서”, “대금 청구 계획서” 순으로 효력 순위를 정한다.

제5조(계약기간 등) ① 본 계약에 의한 “갑”과 “을”의 계약기간은 ____년 __월 __일부터 ____년 __월 __일까지로 한다.

② “을”은 본 계약 체결 후 10영업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업수행계획서에 대하여 “갑”의 검토결과 그 내용이 “갑”이 요구하는 수준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갑”으로부터 보완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 그 결과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사업수행계획서를 “갑”에게 제출하였을 경우 “갑”이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다른 이의가 없을 때에는 자동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

⑤ 제2항의 사업수행계획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갑”과 “을” 당사자 간 서면에 의한 변경 합의를 통해 진행 한다.

제6조(계약보증금) ① “을”은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보증금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기타 “갑”이 지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보증내용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용을 보증해야 한다.

③ “을”이 제출하는 보증보험증권 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보험기간이 계약기간 개시일로부터 계약기간 종료일 다음날 30일 이상일 것

2. 피보증인의 명의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할 것
3. 보증보험 보통 보험약관에 규정된 면책 사유에 불구하고 “갑”에게 귀속시켜야 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 조항이 있을 것
- ④ “을”은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보증금의 처리) 본 계약이 제20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1항에 따라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을”이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위약벌로서 “갑”에게 귀속되며, 계약보증금의 귀속은 “갑”의 “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계약의 일부 이행 여부는 보증금의 전액 귀속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용역업무 수행범위) ① 본 계약에 따라 “을”이 수행할 용역업무의 범위는 본 용역 시답서, 제안 요청서 및 제안서와 같다.

- ② “을”은 향후 본 계약 수행과정에서 업무의 범위가 일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갑”과 “을”이 협의를 통하여 서면으로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용역 결과물에 대한 검사) ① “을”은 “갑”이 용역 결과물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대금청구계획서의 일정에 맞추어 전월 용역 대한 검사조서를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한다.

- ② “갑”은 제1항의 문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확인 서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문서 검사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갑”은 구체적 보완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갑”에게 보완요청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보완하여 다시 제출한다.

제10조(대가의 지급) ① “을”은 제9조 제2항에 따른 검사 확인 서명을 받은 제9조 제1항의 검사조서를 첨부하여 “갑”에게 대금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갑”은 청구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그 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갑”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갑”은 “을”의 산출물에 이상이 있음이 발견되어 시정을 “을”에게 요구 한 경우 보완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제1항의 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제11조(하자보증 및 유지보수) ① 무상하자보증 및 무상유지보수 기간은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최종대금완료일이 용역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상 지체될경우 제5항을 준용한다.

- ② “을”은 제1항의 무상하자보증 및 무상유지보수 기간 중 “갑”이 항상 최적의 상태에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아래 각호의 유지보수 및 하자보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원공급사로 하여금 그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개발 응용 프로그램 오류 또는 하자 보수
2. 개발 응용 프로그램 품질 향상
3. 개발 응용 프로그램 사용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
4. 기타 개발 응용 프로그램 사용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

- ③ “을”은 하자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종 대금 청구시 하자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하자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은 최종검수 기간을 감안하여 계약종료일로부터 13개월(검수기간 1개월, 무상유지보수기간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갑”은 “을”이 제2항의 내용을 불이행하는 경우 제3항의 하자보증보험증권 보증금액을 귀속할 수 있다.

⑤ 용역수행 완료 보고서의 검수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갑”은 구체적 보완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보완 요청일로부터 10영업일까지 보완하여 다시 제출한다. 이 경우 검수기간 1개월이 초과할 경우 하자보증보험증권 기간을 제출일로부터 13개월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인력의 관리 및 감독) ① “을”은 “갑”과 최종 합의된 참여인력을 투입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을”은 참여인력의 관리 및 감독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③ “갑”은 “을”의 참여인력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1. 참여인력 업무의 수행능력에 문제가 되는 경우
2. 기타 업무 수행상 지장을 초래할 사유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④ “을”이 제3항에 의하여 교체된 인력을 “갑”의 동의 없이 당해 용역 수행을 위하여 다시 투입할 수 없다.

⑤ “을”은 인력 교체 시 “갑”의 사전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겨서는 아니 된다.

⑥ “을”은 계약 후 10영업일 이내 참여인력 각자의 보안각서 등 “갑”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을”은 업무수행 중 “을”의 직원에게 발생한 안전 및 재해사고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13조(지체상금) ① “을”은 제8조(용역업무 수행범위)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체일수 매 1일에 대하여 제3조 제1항의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계좌입금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갑”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갑”의 사정으로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3. 기타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되었다고 “갑”이 인정하는 경우

③ “갑”은 제1항의 지체상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용역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④ “을”의 이행 지체로 인한 손해가 지체상금을 초과하였을 경우 “갑”은 “을”에게 지체상금과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보안책임 및 기술지식의 이용) ① “을”은 “갑”이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의 사업참여인원의 신원확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과의 계약으로 인한 업무 수행 중 직접, 간접으로 취득한 비밀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만일, “을”의 보안사항 누설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④ “갑”과의 계약으로 인한 업무 수행 시 생긴 결과물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으며 “을”은 이를

임의로 외부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 ⑤ “갑”은 “을”이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결과물들을 “갑”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및 이용할 수 있다.
- ⑥ “을”은 해당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 및 이에 대한 해소 방안 등을 문서로서 작성 관리하고,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도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⑦ “을”은 해당 계약기간, 하자보증 및 유지보수 기간 중 개발된 응용 프로그램 일체에 대한 취약점 발견 시 이를 무상조치 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누설금지) ①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하게 되는 “갑”의 고객정보, 계좌, 거래 정보 및 기타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할 수 없으며, 이는 계약관계가 종료하더라도 계속하여 효력을 지닌다.

- ② “을”의 대리인, 피용자 및 이행보조인의 제1항 위반은 “을”의 책임으로 하며, “을”은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취득한 “갑”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서약서를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을”은 법률, 사법절차, 정부감독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기준 등에 의하여 정보 및 자료 등을 제출 또는 공개하도록 요구받은 경우에는 “갑”의 사전 승낙을 획득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해당 정보 및 자료 등을 제출 또는 공개할 수 있다.
- ④ “을”은 업무 수행상 취득한 각종 자료, 정보 등은 용역 종료 후에 “갑”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 ⑤ “을”은 제1항 내지 제4항을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갑”에게 손해액 일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지식재산권 등) ① “을”이 “갑”에게 납품하는 산출물은 제3자가 보유한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 ② 제1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민·형사상의 법적 분쟁이 제기된 경우 “을”은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처리하고, 이로 인하여 “갑”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제17조(결과물의 귀속) 본 계약 관련된 결과물은 “갑”의 소유로 하고 “을”은 “갑”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결과물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못한다.

제18조(손해배상) ① “을”이 귀책사유로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로 인하여 해제·해지되는 경우 또는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한 경우 발생한 “갑”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 ② “을”은 그의 고용인,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를 야기한 경우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③ “을”이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해 자신의 귀책사유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여, 제3자가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을”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를 방어하여야 함은 물론 “갑”의 손해 및 비용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손해배상의 예외사항) “을”이 “갑”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예외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
2. “갑”의 운용자, 대리인, 하청인 또는 방문자의 고의에 의한 시스템의 고장이나 훼손
3. “갑”과 “을”의 사업 참여 이외의 인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고장이나 훼손
4. 응용 프로그램과 관련없는 “갑”의 운영 시스템 하드웨어 장비의 장애

제20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을”에게 별도의 최고 없이 서면 통보 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계약된 기간 및 시간 내에 정당한 사유를 통보함이 없이 기타 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용역을 불성실하게 수행하거나, 본 계약의 제반사항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부도처분을 받아 지불정지 상태의 경우
 4. 해산 또는 영업의 전부가 제 3자에게 양도될 경우
 5. 압류, 가압류, 가처분, 파산, 회사정리절차가 진행될 경우
 6. “갑”의 관련 직원에게 대가성 향응 또는 금품제공을 하였거나, 금품제공을 한 업체 및 업체 관련자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7. “을”이 자격상실 또는 기타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갑”이 판단하는 경우
 8. 제24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갑”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 ③ “을”은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갑”의 요청에 따라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갑”이 지정하는 자에게 계약업무의 원활한 업무인계를 하고, 업무처리의 계속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할 의무를 진다.

제21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갑”은 필요한 경우 “을”의 용역수행 과정에서 계약이행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 ② “갑”은 용역수행의 원활한 관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보고, 시정조치를 “을”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③ “을”은 “갑”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갑”이 정한 기한까지 보완 또는 재작업을 실시 하여야 한다.

제22조(통지의무) ①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자본구성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갑”과 “을”이 계약에 따라 각자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중대한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변경되거나 법인이 개인사업자로 변경된 경우

4. 주소, 상호, 대표자 등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② 계약과 관련한 모든 서면은 이 계약에 명시한 주소로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제23조(계약내용의 추가 및 변경) ① “갑”과 “을”은 본 계약을 서면 합의에 의하여 연장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을 연장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하는 날의 10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에 각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기간의 연장은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해 계약기간 내 계약이행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용역내용 변경 등 본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별도 합의할 경우 합의서 또는 변경계약서 내용이 본 계약과 상이하거나 상충될 경우 합의서 또는 변경계약서가 우선 적용된다.

제24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을”은 “갑”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위임 또는 양도, 하도급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을”이 이를 위반한 경우 “갑”은 제20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서면통지로 계약의 해제·해지가 가능하다.

제25조(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계약내용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갑”과 “을”의 분쟁기간 중에도 “을”은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갑”과 “을”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소송의 재판적은 “갑”의 본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두기로 한다.

제26조(청렴계약 등) ① “을”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갑”의 관련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향응 또는 금품제공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② “을”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제20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갑”이 본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권을 가지게 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성립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권이 행사된 경우 계약 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되며 “을”은 이에 관련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익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2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당해 계약에 대해 다음 각호의 부정당행위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12호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1개월 이상 5년 이하로 한다.

1.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를 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에 위반(하도급 통지의무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갑”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갑”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공정거

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4.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조사 설계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5. 공사의 경우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6.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8.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9. 입찰참가자격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10.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11.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12. “갑”의 청렴계약 이행사항을 위반한 자

제28조(교육지원) ① “갑”의 원활한 운영, 관리를 위하여 “을”은 필요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외에도 “을”은 본 계약 관련하여, 향후 “갑”의 직원이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기술이전 등 최선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9조(특약) ① 계약 기간 중 본회의 인력 충원, 인터넷뱅킹 재구축사업의 완료, 업무의 확대·축소 또는 그 밖에 객관적인 사유로 계약상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갑”은 “을”에게 해당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 및 투입인력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라 인수인계를 완료하고 투입인력을 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수인계 및 투입인력 조정이 완료된 경우, “갑”은 완료일 다음 달부터 제29조 제1항에 따른 월 용역 대금 지급 시 조정된 투입인력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차감금액은 계약 체결 전 시담 과정에서 “을”이 제출한 투입인력별 연간 인건비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해당 인력의 연간 인건비를 12로 나눈 월 환산금액으로 하며,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제30조(기타 일반사항) ① 쌍방의 인정된 대표자의 서명 없이는 본 계약 또는 계약의 어떤 권리나 의무를 이행, 변경 또는 수정하지 못한다.

② 본 계약은 계약당사자가 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때부터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체결 전 업무 착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업무착수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각 1부씩 보관한다.